

콘텐츠산업 금융생태계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콘텐츠산업의 선순환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콘텐츠산업의 선순환 금융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콘텐츠 가치평가제도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확대를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협조의 범위)

양 기관은 관련 법령 및 내규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상호 협조하여 수행한다.

1. 콘텐츠가치평가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력
2. 해외진출 콘텐츠 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지원 강화
3. 콘텐츠 산업정보시스템 공유 및 공동 지원사업 발굴

제 3 조 (양 기관의 역할)

양 기관은 제2조에 명시된 업무협조 분야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행하기로 한다.

1. 콘진원은 콘텐츠 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협약기간내 무상으로 수은에 제공한다.
2. 수은은 콘텐츠 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여신 심사시 콘진원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활용하고, 해당 여신 지원시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3. 콘진원은 콘진원이 지원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해서 수은의 해외진출관련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은에 추천한다.
4. 수은은 콘진원이 지원하는 콘텐츠 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하여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을 제공한다.
5. 콘진원은 콘텐츠산업에 대한 산업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를 수은에게 제공한다.
6. 콘진원과 수은은 그밖에 다양한 지원방안의 개발을 통해서 공동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협력한다.

제 4 조 (성실한 상호협력)

양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분담업무의 수행을 위해 상호간 성실하게 협력하기로 한다.

제 5 조 (세부 추진계획 수립)

양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업무협조의 범위에 대한 세부업무는 실무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하고, 필요시 세부협약을 체결한다.

제 6 조 (비밀유지의무)

양 기관은 각자의 비밀보호 방침을 존중하며 상호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권리 · 의무승계)

본 협약 체결 후 양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변경 등 주요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에 따른 권리 · 의무는 포괄 승계한다.

제 8 조 (협약의 변경 및 해석)

1.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른다.

제 9 조 (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일의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11월 2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송성각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이덕훈

송성각

이덕훈